

KMI 동향분석

VOL.82
2018 MAY

발간년월 2018년 5월(통권 제82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최지현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현대송 독도연구센터장
(hyun@kmi.re.kr/051-797-4785)

신수환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김민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김주형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정유민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yloveh6@kmi.re.kr/051-797-4794)

한·일 양국은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된 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석유를 전혀 생산하지도 못한 채 협정이 종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다는 점으로,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길지 않은 기간이다.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교부는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분쟁수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체제 수립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행 거부로 중단 상태

■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대만)이 각각 해저광구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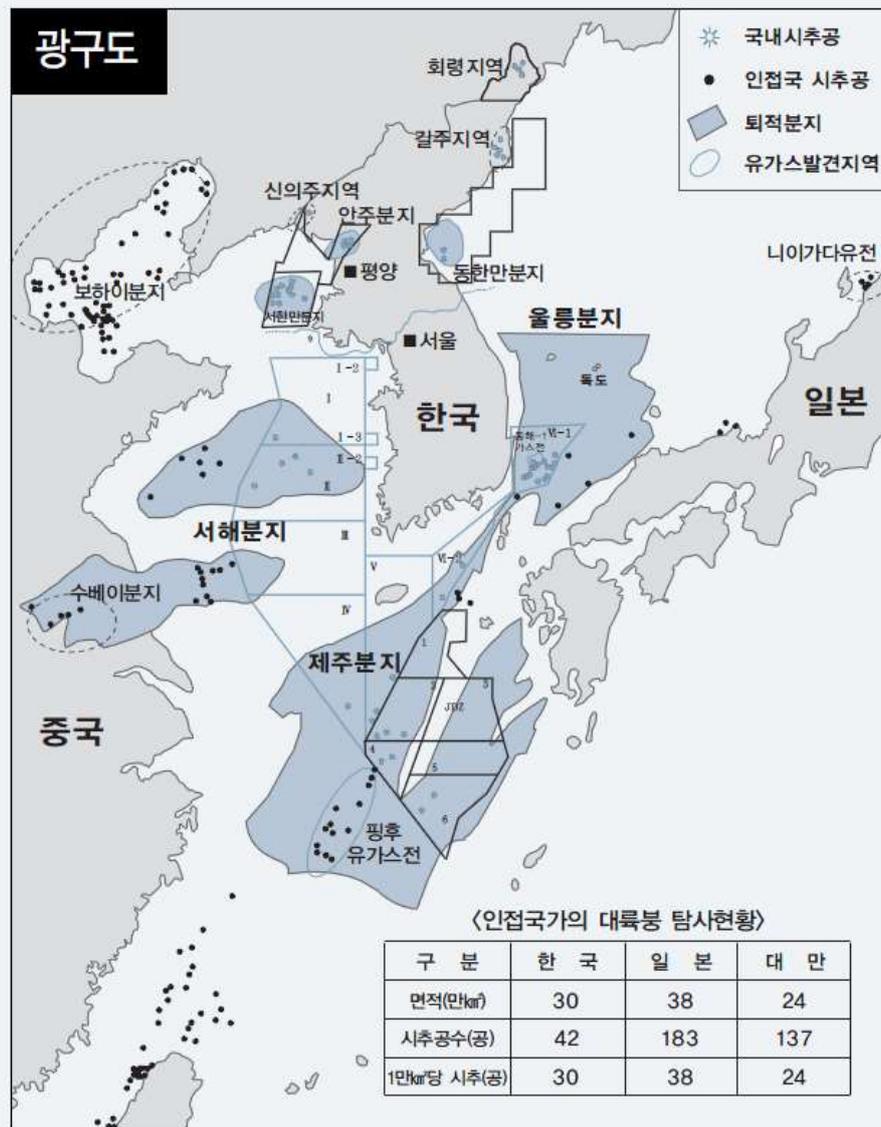
- ECAFE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인 광구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에 따라 1970년 한국, 일본, 중국(대만)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총 1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하였으나 서로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함
-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5월에 동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8개의 해저광구로 구분하고, 현재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7광구로 설정했음
- 우리 측이 “대륙연장론”에 근거해 해저개발광구를 설정하자, 일본 측은 “중간선” 경계를 주장하며 대립
- 한일 양국은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제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함

■ 한일 양국은 1978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발효시켰으나, 현재 일본의 협조 거부로 공동개발 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2028년 협정 종료 예정

-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이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킴
- 1987년까지 1차 탐사에서 7개 광구를 탐사하였으나 성과가 미비하였음. 이후 2차 탐사에서 소구역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확정하였으나 외국계 조광권자인 메이저 석유회사(BP:브리티쉬 페트롤륨)가 광구를 반납하자 나머지 회사 역시 광구를 반납하게 됨

- 2002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조광권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탄성과 탐사를 하였으나, 이후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함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상태임

그림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국의 광구도



자료: 성필중, "석유자급을 제고를 위한 국내대륙붕 개발전략" 「석유협회보」 (2006.7/8)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공동벤처모델’로 양국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조광권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

■ 공동개발협정문은 총 31개의 조문과 합의의사록 및 3개의 교환각서인 부속서로 구성

- 협정의 유효기간은 양국 국회의 비준 및 양국 정부의 비준서 교환이 실시된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간임
-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방식의 형태에 따라 i) 단일국가모델, ii) 공동벤처모델, iii) 공동기구 모델 등의 3가지 모델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두 번째 모델인 ‘공동벤처모델’에 해당함

■ 한·일 양국은 각각 조광권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를 지며, 조광권자는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탐사 채취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

- 한·일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서 탐사권과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자를 선정하여야 하며(협정 제4조), 조광권의 부여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각 소구역에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조광권자가 선정될 수 있음
-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탐사와 채취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동등하게 분담(협정 제9조)

동일 소구역내에 각각의 조광권자는 협의에 의해 운영권자를 결정하며 그 운영권자는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작업을 배타적으로 수행

■ 선정된 조광권자들은 운영협정을 맺고 해당 광구의 탐사 혹은 개발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 가능

- 양국의 조광권자들은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함(협정 제5조)

* 운영계약에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정되어야 함. i)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ii) 운영자의 지정, iii)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iv) 어업상 권익의 조정, v) 분쟁의 해결.

- 운영자 지정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합의를 통하여 지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국이 협의를 하며, 그래도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지정함(협정 제6조)
- 지정된 운영권자는 운영계약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작업에 필요한 인원의 고용과 작업에 관련한 비용을 지출, 변제하며 작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취득하게 됨

■ 조광권자는 8년간 탐사권을 가지며, 자원의 부존이 확인될 경우 30년의 채취권 확보 가능

- 조광권자는 8년의 탐사권과, 30년의 채취권을 가질 수 있음(협정 제10조). 또한, 천연자원 개발이 상업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지면 조광권자는 채취권을 신청하며 채취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탐사 및 채취에 관한 작업은 강제되며 조광권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업을 시작해야 함(협정 제12조)

협정에는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시

■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교섭 및 중재위원회 구성이 가능

-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 경로, 즉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며, 만약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됨(협정 제26조)

초기 일본은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하였지만 1993년 2차 탐사 중지 이후에는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 해태

■ 1979~1987년까지 8년의 1차 탐사 기간 동안 7개 공구를 탐사하였음¹⁾

- 일본은 일본석유(Nippon Oil Exploration Co.) 등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였지만, 우리나라는 KOAM, Texaco 및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조광권을 부여하였음

* KOAM, 미국계 석유회사 웬델 필리스(Wendall Phillips) 외 유니버스 오일(Universe Oil Company Limited), 루이스 지 위크스(Lewis G. Weeks Associated, Ltd.) 해밀턴 브라더스 오일(Hamilton Brothers Oil Company) 등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Korean American Oil Company, KOAM)를 의미

- 2,4,6소구역에서 모두 7개 공을 시추하여 가스징 2공, 유가스징 1공 발견²⁾

* 1980~1981 일본석유 시추 (3공) / 1984~1985 Hamilton 시추 (3공) / 1986 일본석유와 공동시추 (1공)

표 1. 한국과 일본의 조광권자

소구역	한국	일본
1	KOAM	없음
2	Texaco	일본석유
3	Texaco	일본석유
4	Texaco	일본석유
5	Texaco, 한국석유개발공사	일본석유
6	Texaco	일본석유
7	KOAM	일본석유
8	KOAM	제국석유(Teikoku Oil)
9	KOAM	없음

자료: 제5차한일공동위자료,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1) 2010년 국정감사_강창일 위원 한국석유공사, "제7광구(JDZ: 한일공동개발구역), 이대로 방치할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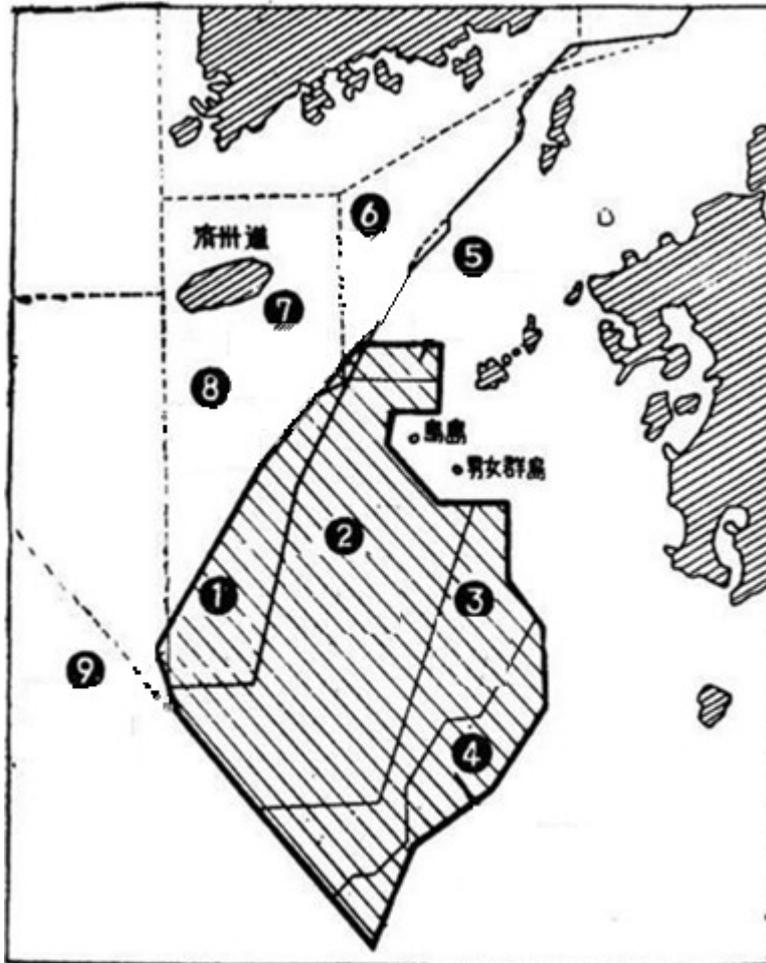
2) 이달석,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연구 :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09-02 (2009), pp. 6-7.

표 2. 소공구별 탐사 운영권자

소구역	탐사
1	미지정
2	.
3	.
4	.
5	일본석유
6	.
7	일본석유
8	제국석유(Teikoku Oil)
9	미지정

자료: 제5차한일공동위자료,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그림 2. 1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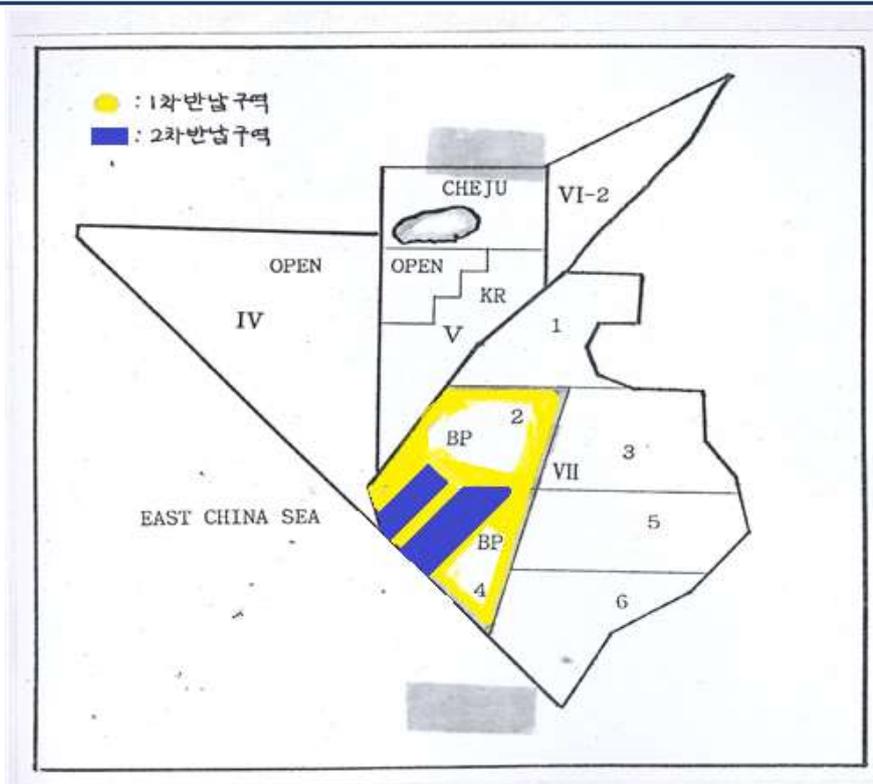


자료 : 동아일보 "한·일 대륙붕협정 서명", 1974.1.30. (1면). 이 기사를 토대로 편집

■ 1991~1993년(2차 탐사), 탄성파 탐사 없이 1차 탐사기간 동안의 탐사자료만 검토하였으며, 결국 조광권자들이 조광권을 포기

- 1991년 양국의 조광권자들이 2소구역 및 4소구역의 운영협정을 체결하여, 8년으로 예정된 2차 탐사(91.9.25.-99.9.24.)를 시작하였음
 - * 한국 측은 브리티시 페트롤륨 (이하 BP), 한국석유개발공사(PEDCO)가 조광권자였으며, 일본 측은 일본석유(NOEC)가 조광권자였음
- 3개의 조광권자는 1차 탐사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2년간의 지형 및 지질 탐사를 실시함
- 1992년 영국 BP가 협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서 2,4소구역의 조광권 포기를 신청하였으며 한국 석유개발공사와 일본석유가 이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며 조광권자가 광구를 1,2차 걸쳐서 반납(93.3)하고 조광권을 포기(93.9.25.)하였음

그림 3. 2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과 광구포기 구역



자료 : 제5차한일공동위자료,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해당 자료를 토대로 편집

- 당시 포기 사유는 2소구역과 4소구역의 개발가치는 어느 정도 있으나 당시의 유가로는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이 어렵고 개발을 위한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었음³⁾

3) 제5차한일공동위자료,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 유전개발과

■ 2001~2004년 중단되었던 탐사를 재개하면서 한일 양국은 3D 탄성파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 지질 구조의 존재는 인정하였지만, 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 상이

- 2001년 12월, 양국 산업 관련 장관회담에서 “유망지역에 3D 탄성파 탐사 공동 실시”에 합의하였음
- 2002년 8월,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JNOC) 간에 공동 탄성파 탐사 운영계약(이하 JSOA)을 체결하여 2소구역에 503km²의 3D 탄성파 탐사 자료 취득, 전산처리 및 해석을 수행하기로 규정함⁴⁾
- 2004년 3월, JSOA에 의거 한국석유공사, 일본석유공단(JNOC)간 운영위를 개최,⁵⁾ 탐사완료를 확인하고 해석결과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함

■ 2006~2010년 한일 간 공동탐사에서 기존 탐사결과 결과물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협력수준을 격하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80년대 1차 탐사자료 및 2002년 탐사자료를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 우리 측은 석유공사가 참가한 반면 일본 측은 민간 기업들이 참가했음⁶⁾
- 공동연구 결과, 양국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음. 우리 측은 부존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 측은 석유자원 부존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으로 해석했음
- 일본 측은 2010년 3월 공동연구 종료 의사를 표명함

표 3. 기간별 공동탐사 참여사 및 평가결과

기간	참여사	내용	성과
2004.10~2005.06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Teikoku	Regional G&G Study in JDZ,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2개 유망구조 도출 (Fugu, Hirame)
2007.03~2007.08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JDZ Oil Seepage 분석	근원암 부존 및 active charge 포텐셜 확인
2008.11~2009.03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퇴적모델 도출을 위한 JDZ 지역 순차층서학 연구	퇴적시스템 및 저류층 발달 양상 규명
2009.09~2010.03	석유공사 Japex JED Cosmo	JDZ 지역 석유시스템 연구	유망구조 및 탐사리스크 평가

자료: 2010년 국정감사 강창일 의원 제시 자료

4)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2년 8월 1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조사 실시”

5)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5월 25일, “丁 산자, 일측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공동시추 제안”

6) ‘10년 국정감사_강창일 위원_한국석유공사, “제7광구(JDZ: 한일공동개발구역), 이대로 방치할건가?”

■ 이후 우리 측이 수차례 협정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협정 이행을 기본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상황

- 2010년 6월, 제11차 배타적 경제수역 회담에서 공동위원회 개최 등 협정 이행을 촉구함
- 2011년 6월 2+2 과장급 회의에서 민간부분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민간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일본 측이 한국 정부 인사 참관 관련 문제로 이를 거부하였음
- 한국은 2009년 한국석유공사에 조광권을 주었으나,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의 조광권도 2017년 기간 만료(8년)로 종료하였음
-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일본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을 강화하며 2002년 실시한 공동 물리탐사 결과에서 나온 공동개발구역내 1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계획을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탐사계획과 추진일정을 마련한다는 것임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

■ 자원개발의 측면에서 10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며, 자원을 발견하더라도 현재의 시간상 한계로 상업 개발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협정이 종료될 수 있음

-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이후, 탐사 및 상업 개발 이후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1 유전 개발 시 1998년 7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파악한 이후, 개발가능성 검토, 상업생산 여부 등을 결정하고 상업 생산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4년 7월임. 탐사 시추 이후 상업 생산까지 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한일 양국은 석유 채취가 가능한 지하 지질구조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지만, 석유의 부존 여부와 그 상업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름. 또한 실제 석유 탐사를 위한 시추를 하더라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부존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10%만 되어도 상업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해저석유 탐사는 발견확률이 낮지만, 동시에 발견에 성공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촉구를 위해 국제재판 제소도 고려해야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상 조광권의 부여는 각기 자국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법의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정 이행을 담당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 이를 위해서 2017년 존속기간이 종료된 한국석유공사의 조광권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조광권을 다시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를 기반으로 일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의 국내법에 따라 일본 측 조광권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검토 필요

- 일본이 조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조광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제4조 제1항)에 위반됨
- 우리나라는 일본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 외교부는 국제법에 따라 협정 위반 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에 따라 일본에 대해서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0조에 따라 조약에 대한 일부의 시행정지, 특히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의 협정 유효기간(50년)의 정지를 주장한다면 협정의 종료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연장시킬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6조에 따라서 일본을 상대로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본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개발 요청을 배척하는 것이 공동개발협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
 - * 다만, 일본이 중재위원 구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단독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상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토 필요

해저자원개발, 해양경계획정 등 복합적 문제의 종합적 정책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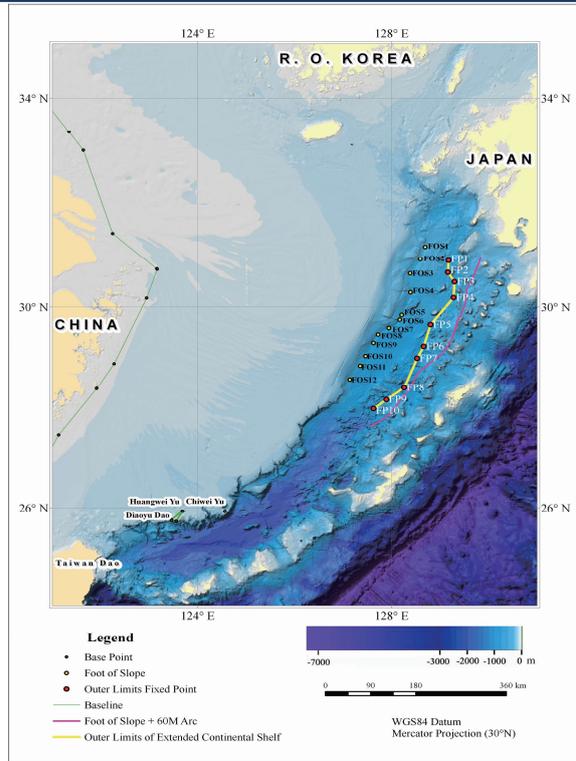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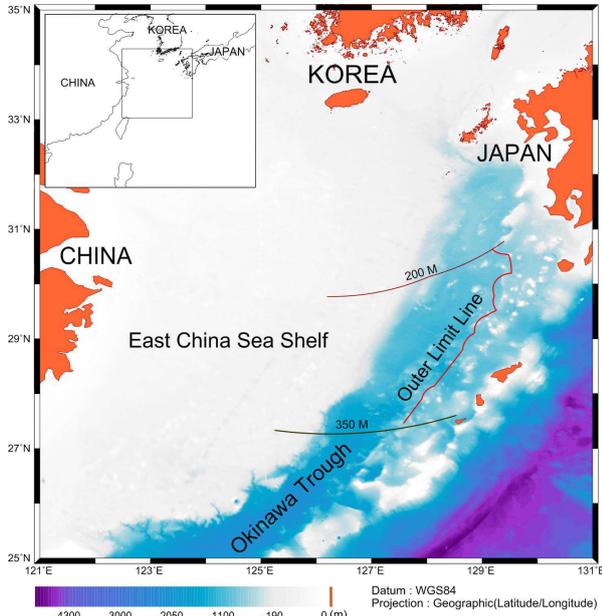
■ 공동개발구역은 한·중·일 3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역이므로 복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다단계 전략 마련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이 지역을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중·일 3국간의 이해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임
 - * 2013년 대륙붕한계위원회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정보제출 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정보를 제출했고 제출 수역이 한중간에 중첩되어 논란이 야기되었음
- 결과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 지역은 자원의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관할권이 중첩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3국의 해양경계획정까지 염두에 둔 다단계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며, 추후 최종적인 대륙붕 및 EEZ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문제까지 조망하면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현재 한중간의 경계획정은 주로 서해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계획정 대상 수역의 남측 한계가 밀로 내려가면 갈수록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최종 경계획정선 획정은 필연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는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단층적 접근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상호 경쟁하고 있는 이 수역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다층적 접근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그림 4. 한국과 중국의 동중국해 200해리 대륙붕 권원 중첩 현황

한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연장 대륙붕 정보

중국인 제출한 200해리 이원 연장 대륙붕 정보



자료 : 한국 CLCS 제출 정보문서 요약본

자료 : 중국 CLCS 제출 정보문서 요약본

그림 5. 한중 가상 중간선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자료 : 해도를 토대로 편집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한중일 3국의 관할권 중첩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간 협력 및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인 사안임

- 한·일 외교관계 전반은 외교부가, 해저자원개발 및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보전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활용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제2조의 3)이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을 넘는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여러 관련 사안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구축,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한국 측 조광권자로 지명되었던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및 해저자원개발 역량도 대응책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

대응전략 수립 시에는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와 법의 기본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 문제는 21세기 국제분쟁의 주요 요인인 만큼 선린 우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육지에서는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경획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 대부분의 국경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관할권이 중첩하는 수역에서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문제로 분쟁이 고조되고 있음
 - *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소속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나,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역시 결국은 해상국경에 관한 분쟁임. 또한 이 해역은 마-중이라는 양대 강국의 힘이 충돌하는 해역이기도 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놓여져 있는 동아시아 해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 간 경쟁 및 충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해양관할권, 해양 자원 개발,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내셔널리즘을 자극시키고 순식간에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임
- 따라서 대응전략 수립 시 주변국과의 우호 선린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법과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가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28.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URL: <http://www.kmi.re.kr/>